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105
----------	--------

제출년월일 : 2024.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버스운영, 이용료 징수, 면제 및 환불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안 제3조)
- 다. 이용료 징수, 면제, 환불(안 제4조~제6조)
- 라.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안 제7조~제8조)
- 마. 위탁운영(안 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7. 11.~7. 31.(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의결(2024. 8.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속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이하 "마포순환열차버스"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된 노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순환 열차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장 결제 후 탑승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자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① 구청장이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제6조(이용료의 환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액 환불
가. 운행 1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확인된 자

나. 천재지변 또는 버스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환불

가. 운행 당일 예약을 취소한 자: 이용료의 50%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마포순환열차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중 차량 및 버스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 방법, 위·수탁 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요 금 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 린 이
	어 른	경로자		
개 인	5,500	3,000	3,500	3,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제9조(위탁운영)

나. 수입발생 요인: 제4조(이용료 징수)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2024. 1. ~ 2028. 12.(60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이용료		96,195	494,208	604,032	576,576	549,120	2,320,131
	소계(a)		96,195	494,208	604,032	576,576	549,120	2,320,131
세출	구비		371,031	483,680	483,680	483,680	483,680	2,305,751
	소계(b)		371,031	483,680	483,680	483,680	483,680	2,305,751
□총비용(b-a)			△274,836	10,528	120,352	92,896	65,440	14,380

- 비용: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4. 재원조달 방안

-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입 및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이우준
연락처	02-3153-8672